

전문교수인사에관한내규

(제정 2009.9.1, 최종개정 2025.4.1.)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명지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전문교수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전문교수라 함은 정부 및 산업체, 연구소 등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①전문교수는 교육공무원법상 초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정부 및 산업체, 연구소 등 해당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15년 이상, 박사학위 소지자는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원과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, 스포츠·예술체육대학, 건축대학, 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및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, 멀티디자인학과, 반도체·ICT대학 반도체공학과 소속 교원은 예외로 한다.(변경 2011.3.1., 2015.12.1., 2022.10.1., 2023.3.1., 2024.11.1., 2025.4.1.)

②전문교수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, 실무경력이 탁월한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도 초빙할 수 있다.(변경 2011.3.1.)

제4조(초빙절차) 전문교수의 초빙절차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.

제5조(직급) 전문교수는 교육 및 실무경력 등에 따라 조교수, 부교수, 교수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(재계약 임용) ①전문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,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 임용하되 정년은 보장하지 아니한다.(변경 2010.9.1)

②전문교수의 재계약 임용기준은 별표의 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에 의한다. 다만,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한다.(변경 2010.9.1, 2011.9.1., 2012.3.1., 2015.6.1.)

제7조(승진) (신설 2010.9.1) 전문교수의 승진절차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되, 승진 임용기준은 별표에 의한다. 다만,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한다.(변경 2011.9.1., 2012.3.1., 2015.6.1.)

제8조(보수) (조번호변경 2010.9.1.) 전문교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권리와 의무) (조번호변경 2010.9.1.) ①전문교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복무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교육 및 대학발전에 힘써야 한다.

②전문교수는 학부소속 교원은 학사과정에서, 대학원소속 교원은 대학원에서, 부설교육기관

소속 교원은 부설교육기관에서 한 학기에 주당 9학점 이상의 강의를 하여야 하고, 3시간 이상 학생지도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소속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그 경우에는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.(변경 2011.9.1)

③전문교수의 실무경력 등을 대학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책임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(조번호변경 2010.9.1.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, 제 규정 및 명지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전문교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

1.심사대상 기간이 2011년 9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교원은 별표2를 적용한다.

2.심사대상 기간이 2011년 8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교원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심사 결과 중에서 해당 교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심사대상 기간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개시되는 교원은 별표 2를, 심사대상 기간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교원은 별표 3을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심사대상 기간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개시되는 교원은 별표2를, 심사대상 기간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교원은 별표3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[별표3] 평가항목 중 책무영역과 교원복무준수 영역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실적부터 반영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 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(삭제)

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(삭제 2024.7.1.)

(별표2) 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[학부(과)소속] (삭제 2024.7.1.)

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[학부(과)소속](삭제 2024.7.1.)

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[대학원 소속](삭제 2024.7.1.)

(별표3) 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[학부(과)소속] (2013.3.1., 변경 2016.10.1., 2022.3.1., 2024.7.1.)

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[학부(과)소속]

구 분	평 가 기 준				대상기간
강의평가 (60)	최종 강의평가 점수 = 학기별 강의평가 점수의 합 / 해당 학기수				심사기간 평균 (심사가 진행되는 당해학기 제외)
	강의평가 점수	평가점수	강의평가 점수	평가점수	
	80점초과 ~ 100점	60점	72점초과 ~ 73점이하	44점	
	79점초과 ~ 80점이하	58점	71점초과 ~ 72점이하	42점	
	78점초과 ~ 79점이하	56점	70점초과 ~ 71점이하	40점	
	77점초과 ~ 78점이하	54점	69점초과 ~ 70점이하	38점	
	76점초과 ~ 77점이하	52점	68점초과 ~ 69점이하	36점	
	75점초과 ~ 76점이하	50점	67점초과 ~ 68점이하	34점	
	74점초과 ~ 75점이하	48점	65점초과 ~ 67점이하	32점	
	73점초과 ~ 74점이하	46점	65점 이하	30점	
※강의평가 점수 : 매학기 강의평가 취득점수 ※학사과정 강의평가만 반영하며, 최종 강의평가 점수에서 발생하는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올림함.					
교육활동 (30)	항 목		배점	평가방법	심사기간 전체
	①학사업무 충실도(책임시간, 강의계획서, 성적입력 등)		10	미달시 1시간당(단, 폐강으로 인한 미달은 제외) 또는 기한 미준수 1강좌당 1점 감점	
	②학부 학생 상담 및 지도		10	20회당 1점/학기 학기당 최대 3점 (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에 한함)	
	③취업지도			3점/1인 (취업연계확인서 필요)	
	④교수법 개발(교수법연수, 신규교과개발, 원어강의 A급 등)		5	1건당 1점 학기당 최대 2점	
	⑤교내외 봉사 및 수상		5	1건당 1점	
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 (10)	구분	항목	배점	평가기준 및 방법	
	교원의 전문성	수업계획서, 자기평가서, CQI 등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.	5	1. 수업내용의 충실성(수업계획서 중심) : 심사기간내의 수업계획서 내용이 매학기 개선 및 변화가 있는지 여부 (동일하다면 감점요소), 입력항목의 누락 및 부실 여부 등	
				2. 교과 발전 및 개선 : 심사기간내의 CQI에 개선내용이 있는지 여부, CQI 내용이 다음학기 수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	
				3. 교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개발(자기평가서 중심) : 수업 및 학생지도 등에 있어 교수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, 개발, 발전 가능성 여부 등	
				1점	3개 항목 모두 미흡
				2점	1개 항목 만족
				3점	2개 항목 만족
			5점	3개 항목 모두 만족	
책무	대학지정 및 법정업무 교육 참여	5	미참여시 교육당 1점 감점 (건별)		

교원 복무 준수 (가감점)	구분		항 목	배점	평가기준 및 방법
	교원 복무 준수	감점 사유	정직(재계약 임용만 해당)	-4	건당 해당점수 감점 (합산 최소 -5점)
			감봉(재계약 임용만 해당)	-3	
			견책(재계약 임용만 해당)	-2	
			주의·경고	-1	
			기타 복무 규정 미준수	-1	
	가점 사유	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	+3	총장상 중 장기근속은 제외(합산 최대 5점)	
		관할청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	+2		
이사장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		+1			
임 용 기준점수	①재계약임용 및 승진임용 80점 이상. ②계약기간 중 학기별로 강의평가 점수 70점 이하가 50% 이상이면 심사기간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재계약을 아니한다.				
특기사항	①책임시간 9학점은 학사과정에서 강의하여야 함. ②교육활동 평가항목 중 ①항목은 심사가 진행되는 해당학기는 제외, ②~⑤항목은 1차(학과)심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제출되는 실적물만 인정함. 다만, 재계약 임용의 경우에는 ④항에 대하여 예정실적물도 인정 함.				

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[대학원 소속]

구 분	평 가 기 준				대상기간						
강의평가 (50)	최종 강의평가 점수 = 학기별 강의평가 점수의 합 / 해당 학기수				심사기간 평균 (심사가 진행되는 당해학기 제외)						
	강의평가 점수		평가점수	강의평가 점수		평가점수					
	90점초과 ~ 100점		50점	74점초과 ~ 76점이하		34점					
	88점초과 ~ 90점이하		48점	72점초과 ~ 74점이하		32점					
	86점초과 ~ 88점이하		46점	70점초과 ~ 72점이하		30점					
	84점초과 ~ 86점이하		44점	69점초과 ~ 70점이하		28점					
	82점초과 ~ 84점이하		42점	68점초과 ~ 69점이하		26점					
	80점초과 ~ 82점이하		40점	67점초과 ~ 68점이하		24점					
	78점초과 ~ 80점이하		38점	66점초과 ~ 67점이하		22점					
	76점초과 ~ 78점이하		36점	65점 이하		20점					
※강의평가 점수 : 매학기 강의평가 취득점수 ※대학원 과정 강의평가만 반영하며, 최종 강의평가 점수에서 발생하는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올림함.											
교육활동 (40)	항 목		배점	평가방법	심사기간 전체						
	①학사업무 충실도(책임시간, 강의계획서, 성적입력 등)		10	미달시 1시간당(단, 폐강으로 인한 미달은 제외) 또는 기한 미준수 1강좌당 1점 감점							
	②대학원생 논문지도 및 상담		10	20회당 1점/학기 학기당 최대 3점 (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에 한함)							
	③교수법 개발(교수법연수, 신규교과개발, 원어강의 A급 등)		5	1건당 1점 학기당 최대 2점							
	④교내외 봉사활동 및 수상		5	1건당 1점							
	⑤교원연수회 사유 없이 불참		10	1건당 1점 감점							
⑥학과(단과대학) 행정 제반 사항 불성실(학과 회의 불참 등)											
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 (10)	구분	항목	배점	평가기준 및 방법							
	교원의 전문성	수업계획서, 자기평가서 등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.	5	1. 수업내용의 충실성(수업계획서 중심) : 심사기간내의 수업계획서 내용이 매학기 개선 및 변화가 있는지 여부 (동일하다면 감점요소), 입력항목의 누락 및 부실 여부 등 2. 교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개발(자기평가서 중심) : 수업 및 학생지도 등에 있어 교수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, 개발, 발전 가능성 여부 등 <table><tr><td>1점</td><td>2개 항목 모두 미흡</td></tr><tr><td>3점</td><td>1개 항목 만족</td></tr><tr><td>5점</td><td>2개 항목 모두 만족</td></tr></table>		1점	2개 항목 모두 미흡	3점	1개 항목 만족	5점	2개 항목 모두 만족
	1점	2개 항목 모두 미흡									
3점	1개 항목 만족										
5점	2개 항목 모두 만족										
책무	대학지정 및 법정업무 교육 참여	5	미참여시 교육당 1점 감점 (건별)								
교원 복무 준수 (가감점)	구분		항 목	배점	평가기준 및 방법						
	교원 복무 준수	감점 사유	정직(재계약 임용만 해당)	-4	건당 해당점수 감점 (합산 최소 -5점)						
			감봉(재계약 임용만 해당)	-3							
			견책(재계약 임용만 해당)	-2							
			주의·경고	-1							
			기타 복무 규정 미준수	-1							
	가점 사유		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	+3	총장상 중 장기근속은 제외(합산 최대 5점)						
			관할청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	+2							
			이사장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	+1							

임 용 기준점수	①재계약임용 및 승진임용 80점 이상. ②계약기간 중 학기별로 강의평가점수 70점 이하가 50% 이상이면 심사기간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재계약을 아니한다.
특기사항	①책임시간 9학점은 대학원에서 강의하여야 함. ②교육활동 평가항목 중 ①항목은 심사가 진행되는 해당학기는 제외, ②~④ 항목은 1차(학과)심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제출되는 실적물만 인정함. 다 만, 재계약 임용의 경우에는 ③항에 대하여 예정실적물도 인정 함.

[별지서식1] (신설 2016.10.1.,2019.1.1) 전문교수용(학부(과)/단과대학) - (별표1) 임용심사
기준 적용자

(재계약•승진)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(삭제 2024.7.1.)

[별지서식2-1] (신설 2016.10.1.,2019.1.1) 학부(과) 소속 전문교수용(학부(과)/단과대학) - (별표2) 임용심사기준 적용자

(재계약•승진)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(삭제 2024.7.1.)

[별지서식2-2] (신설 2016.10.1.,2019.1.1) 대학원 소속 전문교수용(대학원 전공/소속 대학원) - (별표2) 임용심사기준 적용자

(재계약●승진)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(삭제 2024.7.1.)

[별지서식3-1] (재계약•승진)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(신설 2016.10.1., 변경 2019.1.1., 2021.1.1.) 학부(과) 소속 전문교수용(학부(과)/단과대학) - (별표3) 임용심사기준 적용자

(재계약•승진)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

평가 대상자	학부(과)		직급		성명	
현재 평가 기간						

1. 강의평가(60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- 강의평가	60		

※ (별표2)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에 의한 강의평가 점수 기재

2. 교육 활동(30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- 학사업무 충실도 (책임시간, 강의계획서, 성적입력 등)	10		미달시 1시간당 또는 1회당 1점 감점
- 학부 학생 상담 및 지도 - 취업지도	10		상담 및 지도 : 20회당 1점/1학기 (학기당 최대 3점) 취업지도 : 3점/1인 ※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에 한함
- 교수법 개발(교수법연수, 신규교과개발, 원어강의 A급 등)	5		1건당 1점 (학기당 최대 2점)
- 교내외 봉사 및 수상	5		1건당 1점

3.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 (10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교원의 전문성	5		
교원의 책무	5		

4. 교원 복무 (가감점 ±5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교원 복무 준수	±5		

※ (별표2)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의 내용에 열거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기초로 평가

※ 평가근거는 구체적으로 기술

평가 점수 합계(100점 만점)	
-------------------	--

20 . . .

평가위원 직위 : 직급 : 성명 : ㉠

[별지서식3-2] (재계약•승진)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(신설 2016.10.1.,2019.1.1., 2021.1.1.) 대학원 소속 전문교수용(대학원 전공/소속 대학원) - (별표3) 임용심사기준 적용자

(재계약•승진)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

평가 대상자	학부(과)		직급		성명	
현재 평가 기간						

1. 강의평가(50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- 강의평가	50		

※ (별표3)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에 의한 강의평가 점수 기재

2. 교육 활동(40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- 학사업무 충실도 (책임시간,강의계획서, 성적입력 등)	10		미달시 1시간당 또는 1회당 1점 감점
-대학원생 논문지도 및 상담	10		20회당 1점/1학기 (학기당 최대 3점) ※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것에 한함
- 교수법 개발(교수법연수, 신규교과개발, 원어강의 A급 등)	5		1건당 1점 (학기당 최대 2점)
- 교내외 봉사활동 및 수상	5		1건당 1점
- 교원연수회 사유 없이 불참	10		
- 학과(단과대학) 행정 사항 불성실 (학과 회의 불참 등)			

3.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 (10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교원의 전문성	5		
교원의 책무	5		

4. 교원 복무 (가감점 ±5점)

평 가 항 목	배점	평가 점수	평가 근거
교원 복무 준수	±5		

※ (별표3)전문교수 임용심사기준의 내용에 열거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기초로 평가
 ※ 평가근거는 구체적으로 기술

평가 점수 합계(100점 만점)	
-------------------	--

20 . . .

평가위원 직위 : 직급 : 성명 : 인

[별지서식4] (재계약·승진)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 (신설 2016.10.1.,2019.1.1., 2022.3.1.) 전문교수용(학부(과)/단과대학 및 대학원 전공/소속 대학원)

(재계약·승진)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

평가 대상자	학과(부)		직급		성명	
현재 평가 기간						

평가 영역 평가 위원	교육 영역 (강의평가)	교육활동	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	교원복무 준수(가감점)	합계
A					
B					
C					
⋮					
J					
총 합 의 견 :					

* 심사위원은 무기명으로 기재 / 대외비 처리 요망

2 0 . . .

심사위원장 : (인)